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6-24호
2026. 5. 8.(금)

차 례

고 시(2)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고시 제2026-37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6-38호) 5

공 고(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545호) 6
-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548호) ... 11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6-552호)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563호) 19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567호) 25

공 략									
-----	--	--	--	--	--	--	--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목상N1지구	대덕구 목상동 산6-2	붕괴 위험	D	3,885m ²	낙석 발생,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3.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목상N1지구	2026년 하반기 이후	309	녹화공, 낙석방지울타리, 산마루배수로 설치, 콘크리트옹벽 보수 등

※ 사업시기는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5. 행위허가 등의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재난안전과 또는 문화관광체육과)과 협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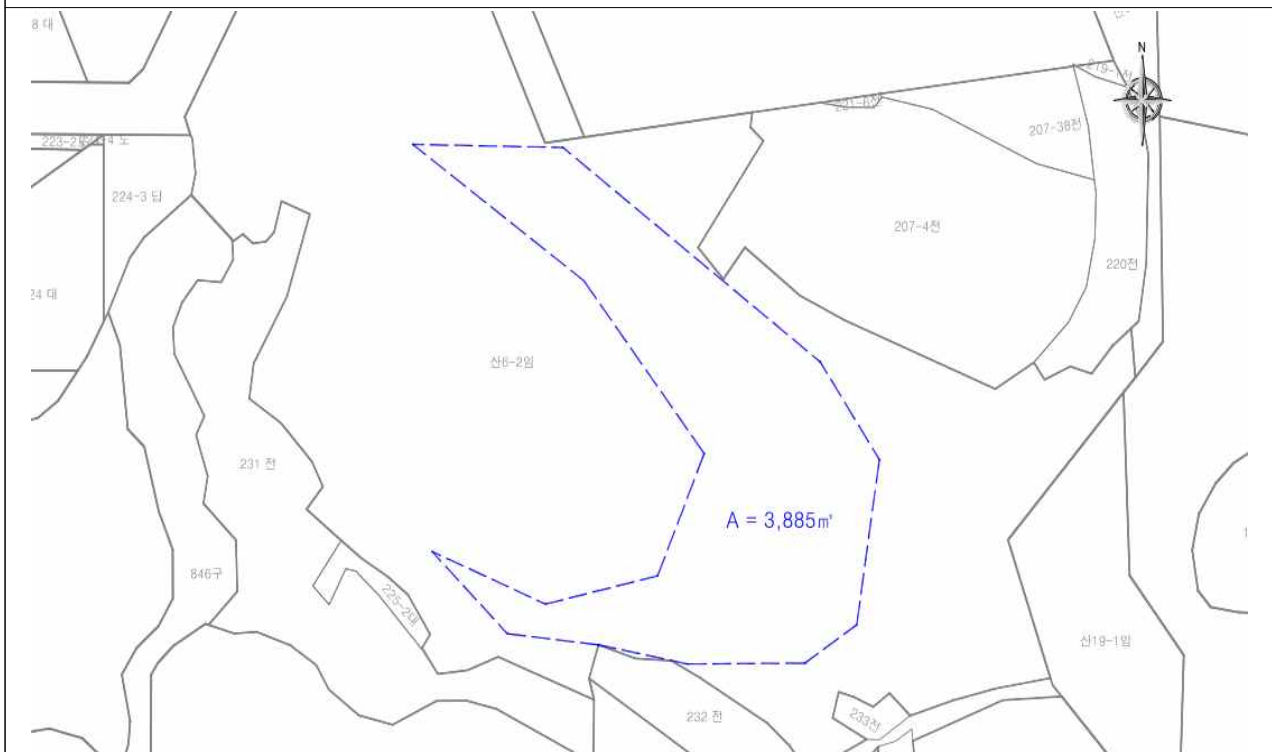
6. 지형도 열람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042-608-5351~3)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고시지형도 1부. 끝.

□ 지형도면 (목상N1지구)



대덕구 목상동 산6-2 (지형도면)



급경사지 지정 면적 3,885m²

□ 토지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목상동	산6-2	임	16,383	3,88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탄진동 792	한절구지로 54번길 9	건물신축	한절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2. 12. 23.
신탄진동 810	한절구지로 54번길 33-1	건물신축	한절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2. 12. 23.
신탄진동 840	한절구지로 54번길 45	건물신축	한절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2. 12. 2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5. 8. ~ 5. 31. (23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 (☎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6. 1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6. 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6. 30.)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MIRZAKHME**** NOZIMA****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1길 39-25, *동 4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김*송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5-*, *층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강*귀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120, 20*동 5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별첨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박*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87번길 7*-*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조*형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29, 11*동 6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54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5. 8. ~ 5. 22.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6. 8.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3.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3.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한*우	96마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동 1***호(석봉동, 금강역슬루타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장*아	53로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90, 3**동 ***호(어진동, 한뜰마을3단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천*애	17머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동 2***호(석봉동, 금강역슬루타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배*현	48라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동 2***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이*형	64오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25번길 44, *층동 10*호(갈마동)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전*도	35주9***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381번길 19, *동 10*호(가양동, 실로파크빌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자	328나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63, 30*동 1***호(신탄진동, 새여울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손*규	157조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6**(석봉동)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진	48오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안길 46-1, ***호(신탄진동, 베스트빌)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수취인불명
양*복	49소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10*동 ***호(조원그린타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최*환	대전80배1***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24, ***호(내동)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박*원	68소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20*동 20*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강*구	382다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동 1***호(법동, 삼호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권*복	08더0***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8번길 75, ***호(괴정동, 한밭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대덕구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deok.go.kr)

4. 행정예고 기간: 2026. 5. 8.(금) ~ 2026. 5. 28.(목) / 20일간

5. 설치장소

연번	행정동	주소	비고
1	오정동	오정동 327-2 일원	
2	비래동	비래동 122-6	
3	비래동	비래동 144-42	
4	비래동	비래동 433	
5	신탄진동	신탄진동 142-10	
6	대화동	대화동 35-334	
7	대화동	대화동 31-24	
8	덕암동	평촌동 297-3	
9	덕암동	상서동 167 일원	
10	석봉동	석봉동 321-11 일원	
11	석봉동	석봉동 307-1	

6. 촬영범위 및 시간: 클린지킴이(CCTV) 설치구역 반경 5~20M, 24시간 센서감응 식 촬영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참조

-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2)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기간: 2026. 05. 28.(목)까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라.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본관 2동 2층 자원농생명과
(전화 042-608-6834, FAX 042-608-3850, E-mail:
alstn940@korea.kr)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국내·외 연수 등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내·외 연수 등 지원 대상자 정비(안 제6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08-6551, FAX: 042-608-3821, E-mail: hsl020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담당자 홍성래(전화: 042-608-65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을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u>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u> 국내·외 연수 등 지원</p> <p>4. ~ 7. (생 략)</p>	<p>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u> ----- -----.</p> <p>4. ~ 7.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5. 8. ~ 2026. 5. 22.(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유통전문 판매업	이루	김○○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28, 103호 (송촌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5.10.01.)	직권말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중도매인254 장안유통	김○○	대덕구 한밭대로 987, 청과동 1층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사업자등록 폐업 (2025.09.05.)	직권말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우주농산	최○○	대덕구 한밭대로972번길 36, 1층 (오정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5.06.10.)	직권말소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세븐일레븐 대전목상센터점	박○○	대덕구 대덕대로1464번길 21, 1층 (목상동)	사업자등록폐업 (2025.11.01.)	직권말소

4.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

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 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덕구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